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70821(본소), 2018나2070838(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19. 5. 10.

판결 선고 2019. 6. 21.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가합100452(본소),
2018가합106652(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 청구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항소 제기 이전의 소송비용 가운데 1 감정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가 각자
부담하고, 2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가운데 본소로 인한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본소로 인한 부분의 75%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1 목록 제2항에 적힌 건물1)을 철거하고, 원고 A에게 같은 목록 제1의 가항에 적힌 토지를,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1의 나항에 적힌 토지를 각 인도하며,

나. 원고 A에게 343,09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과 2017. 1. 1.부터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에 적힌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6,218,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B에게 405,8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과 2017. 1. 1.부터 별지1 목록 제1의 나항에 적힌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251,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아래와 같은 판결.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에게 462,765,234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 A은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3)에 관하여 2015. 12. 31. 매매 또는 2019.4. 17.자 준비서면 부분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4)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77,76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임차한 J 토지뿐 아니라 원고 B 소유인 K 토지까지 걸쳐서 지어져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J 토지의 2016년도 차임 상당액인 69,091,000원과 2017. 1. 1.부터 J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6,128,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2) 원고 B에게 K 토지의 2016년도 차임 상당인 2,835,000원과 2017. 1. 1.부터 K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251,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서 F 그룹에 공급할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H와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경 피고 소유의 J 토지를 H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와 원고 B에게 462,765,234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추후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이 H와 원고 B에서 원고들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늦어도 2016.5. 10.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0. 매매가 성립하였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J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 A에게 2015. 11. 19.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또는 이 사건 2019. 4. 17.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장 건물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또는 이 사건 2019. 4. 17.자 준비서면 부분이 원고 A에게 송달된 날 매매가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 임차인인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 A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원고들과 피고의 별도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공장 이전이 완료된 2016년 6월경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2016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이 형식적으로 피고 앞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다. 특히 피고가 공장을 이전한 2016년 6월경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A은 J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J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피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에 반한다.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통하여 그 직접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만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건물의 직접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

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9면 15행~10면 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갑 제3, 5, 7, 11, 13, 16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1면 6~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4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직후인 2013. 8. 1. F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들 소유의 20필지 토지에 관하여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23. 6. 30.까지'이다). 그런데 만약 원고들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F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개시일을 '2016. 1. 1.'로하는 임대차계약을 미리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역시

임대차목적물에 포함시켰을 법하다. 그러나 원고들과 F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임대차목적물로 적혀 있지 않고, 그 후 피고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3년 7월경부터 2015. 12. 31.까지 J 토지를 차임은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접한 K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피고의 이익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J 토지를 원고 측에 매도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2면 8~18행 중 [] 부분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은 원고 A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J 토지에만 있고, K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은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서 T 토지에 접한 K 토지에 지어진 후 지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 연결되었고,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 독립한 용도나 경제적 가치를 상정하기 어렵다(피고는 2019. 6. 12.자참고서면을 통하여 K 토지에 지어진 시설은 오수처리와는 무관한

폐수처리시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이 철거되기 이전 건축물대장(을 제12호증, 다음부터 '구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현황도에는 이 사건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이 '오, 폐수 합병처리시설'이라고 적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의 경우 별도로登記부가 개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이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을 신축한 피고의 의사 역시 이를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 일체로 취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2면 아래에서 2행~13면 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라)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이 1동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① J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의 경우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고, ②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부분을 철거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하였으므로 2019. 4. 17.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 A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②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아니라, 3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점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8. 11. 20.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U), 그 무렵 채무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대체집행신청에 관한 심문서가 송달된 사실, ②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을 철거한 후 2018. 12. 3. 원고 측에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K 토지의 인도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담긴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근거한 대체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철거의무를 임시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이 사건 공장건물

부분과 이 사건 오페수처리시설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 규정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4면 15~2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 A이 J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J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이 지급된 경우에 있어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피고 대리인은 2019. 4. 19.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의 철거의무 및 J 토지의 인도의무'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기록에 나타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J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A와 K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5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제1심 감정인 S의 차임 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늦어도 2016. 5. 10.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0. 매매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약정 매매대금인 462,765,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11. 19.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2019. 4.17.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또는 이 사건 2019. 4. 17.자 준비서면 부분이 원고 A에게 송달된 날 매매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의 시가 상당 매매대금인 377,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과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건물로서 피고에게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 규정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반소 청구 중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손철우, 판사 이재신

별지1

목록

1. 토지의 표시

가. 이천시 J 공장용지 7,951㎡

나. 이천시 K 공장용지 325㎡

2. 건물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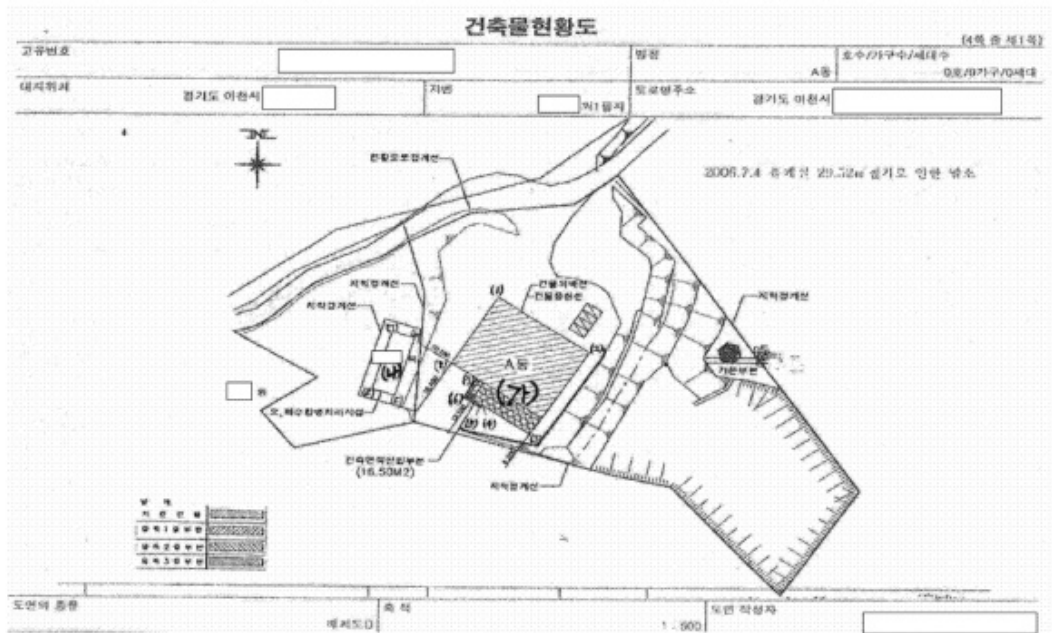
이천시 J, K 지상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공장

1층 일반공장 853.5㎡

2층 일반공장 117㎡

3층 일반공장 117㎡. 끝.

별지2



1) 별지1 목록 제1항에 적힌 각 토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은 별지2 건축물 현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53m²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공장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ㄱ), (나), (二),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2m² 지상 오폐수합병처리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공장 건물 부분과 합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원고들은 본소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건물전체의 철거를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전제로 응소하였다.

2)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19. 4. 17.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란의 제2항에 적혀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오폐수처리시설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장 건물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5) 제1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원고들이 2019.3. 13.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